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심의·의결

안건번호 제2019 - 51 - 282호

안 건 명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 사업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및 시정 권고에 관한 건

피심의인 (주)현대에이치씨엔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9(서초동)
대표이사 김성일

의 결 일 2019. 10. 23.

주 문

피심의인에게 복수채널사용사업자(MPP법인)와 프로그램 공급 계약 시에도 각각의 개별 채널사용사업자(이하 'PP')의 평가결과를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권고한다.

이 유

I. 기초 사실

1. 피심의인 일반 현황

- 피심의인은 방송법 제9조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의하여 종합유선 방송사업자 및 기간통신사업자로 허가를 받아 케이블TV, 인터넷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계열 지역 SO를 합병하여 현재 1개 법인, 8개 방송구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인명	가입자수(명)	방송매출액 (백만원)	프로그램 사용료(백만원)
(주)현대에이치씨엔	1,294,042	205,231	23,710

※ 출처 : 사업자 제출 자료 참조('18년말 기준)

2. 조사 방법

- 자사 계열 PP에 대한 과다 지급 여부는 피심의인과 타 사업자가 피심의인 계열 PP에게 지급한 프로그램 사용료를 비교하여 판단하였다.
 - 비교 대상 채널에 대한 시청 가능 가구를 확인하여 과다 지급 여부에 대한 합리성을 검증하였다.
- 다른 PP에 대한 수익 제한 여부는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에서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지상파·중편·CJ ENM 계열 PP 및 보도 PP를 제외한 일반 PP를 대상으로 확인하였다.
 - 일반 PP에게 지급한 프로그램 사용료 중에서 피심의인 계열 PP와 기타 일반(비 자사 계열) PP가 차지하는 비율을 타 사업자와 비교하여 판단하였다.

II.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대상 행위

방송통신위원회는 (주)현대에이치씨엔의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및 채널 평가 관련 자료, 피심의인 면담 등을 통하여 피심의인 계열 외 기타 일반 PP의 프로그램 사용료 수익 제한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일반 PP의 수익 제한

- 피심의인은 자사 계열 PP에게 MSO 평균의 82 ~ 90% 수준의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급하였다. <표1 참조>

< 표1 피심의인 계열 PP에게 지급한 프로그램 사용료 비교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피심의인	1,053	90%	953	82%	953	85%	923	83%
MSO 평균	1,169	100%	1,157	100%	1,116	100%	1,104	100%

- 피심의인이 자사 계열 외 기타 일반 PP에게 지급한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비율은 MSO 평균 보다 2.72 ~ 3.35%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2 참조>

< 표2 피심의인 계열 및 기타 일반 PP에게 지급된 비율 >

(단위 :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열 PP	기타 일반 PP	계열 PP	기타 일반 PP	계열 PP	기타 일반 PP	계열 PP	기타 일반 PP
피심의인(A)	9.18	90.82	8.39	91.61	8.39	91.61	8.29	91.71
MSO 평균(B)	5.83	94.17	5.67	94.33	5.55	94.45	5.55	94.45
A - B	3.35	Δ3.35	2.72	Δ2.72	2.84	Δ2.84	2.74	Δ2.74

- 피심의인 계열 PP의 시청가능 가구는 MSO 평균의 74%, 지급된 프로그램 사용료는 MSO 평균의 85%로 나타났다('17년 기준) <표3 참조>

< 표3 피심의인 계열 채널의 방송 커버리지 >

(단위 : 단말장치 / 백만원)

연도	구 분	씨제이헬로	티브로드	딜라이브	현대 에이치씨엔	씨엠비	MSO 평균
2017	전체 가입가구	4,221,367	3,169,198	2,389,242	1,308,692	1,551,766	2,528,053
	피심의인 계열 PP 시청 가능가구	2,660,354	1,913,401	1,639,722	1,239,525	920,149	1,674,630
	피심의인 계열 PP 프로그램 사용료	1,100	2,174	841	953	511	1,116

나. 자사 계열 PP의 프로그램 사용료 변동 폭 과다

- 자사 계열 PP에게 지급한 프로그램 사용료는 감소 추세에 있음. 다만, 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임의 배분하였다.

- 계열 PP 중 '드라마H(채널명)', '헬스메디TV(채널명)'의 '16년 프로그램 사용료를 전년 대비 각각 156%, 424% 인상하고, '채널칭(채널명)', 'TRENDY(채널명)'는 각각 △38%, △44% 인하하여 지급하였다.

<표4 참조>

< 표4 피심의인 계열 PP 프로그램 사용료 변동 현황 >

(단위 : 백만원)

채널명	2015년	2016년	전년비	2017년	전년비	2018년	전년비
드라마H	74	191	156%	191	0%	186	△3%
채널칭	387	238	△38%	238	0%	232	△2%
TRENDY	341	191	△44%	191	0%	186	△3%
ONT	221	181	△18%	181	0%	175	△3%
헬스메디TV	29	152	424%	152	0%	144	△6%
합 계	1,052	953	△9%	953	0%	923	△3%

III. 위법성 판단

- 피심의인이 '15년 ~ '18년 자사 계열 외 일반 PP에게 지급한 프로그램 사용료 비율이 MSO 평균보다 2.72 ~ 3.35% 낮으나
 - 프로그램 사용료는 유료방송사업자와 PP사업자의 협상력 등 다양한 요소를 감안하여 결정되고 있으므로 일반 PP에게 지급한 프로그램 사용료 비율이 MSO 평균보다 2.72 ~ 3.35% 낮은 사유만으로 다른 PP사업자의 적정한 수익 배분을 제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방송법 제85조의2(금지행위) 제1항제2호, 동법 시행령 제63조의5[별표2의3] II.3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IV. 시정 권고

- 피심의인에게 복수채널사용사업자(MPP법인)와 프로그램 공급 계약 시에도 각각의 개별 채널사용사업자(PP)의 평가결과를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권고한다.

위 원 장

한 상 혁



부위원장

김 석 진



위 원

허 욱



위 원

표 철 수



위 원

고 삼 석

